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459호(號) 1931(昭和 6)년 11월 16일 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564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38호(號)(조선총독부철도[朝鮮總督府鐵道], 사설철도(私設鐵道), 궤도(軌道) 및 항로(航路) 간(間) 여객 및 수·소하물 연대운송규칙[旅客及手·小荷物連帶運送規則]) 중(中) 1931(昭和 6)년 11월 16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1(昭和 6)년 11월 16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2조(條)제4호(號) 중(中) 「조선철도주식회사(朝鮮鐵道株式會社)」를 「연대운수(連帶運輸)를 하는 철도(鐵道) 또는 궤도(軌道)가 경영(經營)하는」으로 개정함.